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17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반’(4·5급)을 ‘동남권사업과’(4급)로 재편하여 일반직 정원 조정 (4·5급 $\Delta 1 \rightarrow 4$ 급 +1)
- 나. 문화본부 박물관과의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및 ‘보이는 수장고’ 사무 관련 연구직 학예연구사 2명 증원 ※ 일반직공무원 2명 감축
- (일반직) 5급이하 $\Delta 2 \rightarrow$ (연구직) 연구사 +2
- 다. 정책수요에 적시 대응 등을 위해 ‘전문경력관’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상향 조정 (1.5% \rightarrow 1.6%, +0.1%p)
 - 행정환경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나, 현재 전문경력관 정원(1.46%, 157명)이 조례상 한계(1.5%, 160명)에 달함
 - 향후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전문경력관 추가 지정을 위해 8·9급 정원비율을 축소하고 전문경력관 정원 비율 상향 조정
 - ▶ 8·9급(이상) : 7.0% \rightarrow 6.9% ($\Delta 0.1\%p$)
 - 전문경력관(이내) : 1.5% \rightarrow 1.6% (+ 0.1%p)

[별표2]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이내)	5급 (이내)	6급 (이내)	7급 (이내)	8·9급 (이상)	전문경력관 (이내)
현행	3.5%	16.5%	37.0%	34.5%	7.0%	1.5%
개정(안)	3.5% (-)	16.5% (-)	37.0% (-)	34.5% (-)	6.9% ($\Delta 0.1\%p$)	1.6% (+0.1%p)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3. 10. 6. ~ 10. 10.)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효원 (☎2133-6729)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중 1. 일반직공무원의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6.9%이상	1.6%이내
----	--------	---------	---------	---------	--------	--------

별표 4의 표 중 일반직 계란, 4급란, 4·5급란, 5급 이하 소계란, 연구직 계란, 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0					
-------	--------	--	--	--	--	--

4급	259	154	19	8	70	8
4·5급	8	8				
5급 이하 소계	10,220					

연구직 계	410					
-------	-----	--	--	--	--	--

연구사	337					
-----	-----	--	--	--	--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2]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9급</th> <th>전문경력관</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3.5%이내</td> <td>16.5%이내</td> <td>37.0%이내</td> <td>34.5%이내</td> <td>7.0%이상</td> <td>1.5%이내</td> </tr> </tbody> </table> <p>[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1,73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r> <td>일반직계</td> <td>10,70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r> <td>4급</td> <td>258</td> <td>153</td> <td>19</td> <td>8</td> <td>70</td> <td>8</td> </tr> <tr> <td>4·5급</td> <td>9</td> <td>9</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10,22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r> <td>연구직계</td> <td>40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생략)</td> </tr> <tr> <td>연구사</td> <td>33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7.0%이상	1.5%이내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계	10,702						(생략)							4급	258	153	19	8	70	8	4·5급	9	9					5급 이하 소계	10,222						(생략)							연구직계	408						(생략)							연구사	335						(현행과 같음)							<p>[별표 2]</p> <p>-----</p> <p>-----</p> <p>-----</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9급</th> <th>전문경력관</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3.5%이내</td> <td>16.5%이내</td> <td>37.0%이내</td> <td>34.5%이내</td> <td>6.9%이상</td> <td>1.6%이내</td> </tr> </tbody> </table> <p>[별표 4]</p> <p>-----</p> <p>-----</p> <p>-----</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1,73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 </tr> <tr> <td>일반직계</td> <td>10,70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 </tr> <tr> <td>4급</td> <td>259</td> <td>154</td> <td>19</td> <td>8</td> <td>70</td> <td>8</td> </tr> <tr> <td>4·5급</td> <td>8</td> <td>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10,22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 </tr> <tr> <td>연구직계</td> <td>41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 </tr> <tr> <td>연구사</td> <td>33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6.9%이상	1.6%이내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현행과 같음)							일반직계	10,700						(현행과 같음)							4급	259	154	19	8	70	8	4·5급	8	8					5급 이하 소계	10,220						(현행과 같음)							연구직계	410						(현행과 같음)							연구사	337						(현행과 같음)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7.0%이상	1.5%이내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생략)																																																																																																																																																																																																																			
일반직계	10,702																																																																																																																																																																																																																		
(생략)																																																																																																																																																																																																																			
4급	258	153	19	8	70	8																																																																																																																																																																																																													
4·5급	9	9																																																																																																																																																																																																																	
5급 이하 소계	10,222																																																																																																																																																																																																																		
(생략)																																																																																																																																																																																																																			
연구직계	408																																																																																																																																																																																																																		
(생략)																																																																																																																																																																																																																			
연구사	335																																																																																																																																																																																																																		
(현행과 같음)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6.9%이상	1.6%이내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현행과 같음)																																																																																																																																																																																																																			
일반직계	10,700																																																																																																																																																																																																																		
(현행과 같음)																																																																																																																																																																																																																			
4급	259	154	19	8	70	8																																																																																																																																																																																																													
4·5급	8	8																																																																																																																																																																																																																	
5급 이하 소계	10,220																																																																																																																																																																																																																		
(현행과 같음)																																																																																																																																																																																																																			
연구직계	410																																																																																																																																																																																																																		
(현행과 같음)																																																																																																																																																																																																																			
연구사	337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총 정원 변동이 없어,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박효원 (☎ 2133-6729)